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. 12. 7 선고 2023가단237469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3. 11. 9.

판 결 선 고 2023. 12. 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0,635,453원 및 그 중 18,834,925원에 대하여 2023. 10. 2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주식회사 D(이하 ‘소외 회사’라고 한다)는 2021. 4. 5. 원고로부터 (차량번호 1 생략) 그랜저 자동차를 월 납입금 773,100원, 약정기간 2021. 5. 8.부터 48개월, 연체이율 24%로 정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(이하 ‘이 사건 계약’이라고 한다).

나.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다.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월 납입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,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.

라. 2023. 10. 23. 기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연체 리스료 7,157,409원, 대납금(범칙금) 984,580원¹⁾, 지연배상금 1,800,528원, 중도해지수수료 9,992,936원, 원상회복비용 700,000원 합계 20,635,453원이다(= 7,157,409원 + 984,580원 + 1,800,528원 + 9,992,936원 + 700,000원).

마. 소외 회사는 2023. 7. 12. 위 자동차를 원고에게 반납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원고가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보증채무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살피건대, 갑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액인 위 합계금 20,635,453원 및 그 중 지연배상금 1,800,528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8,834,925원(= 7,157,409원 + 984,580원 + 9,992,936원 + 700,000원)에 대하여 2023. 10. 2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인 연 24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정석

1) 984,580원 = 1,374,271원 - 389,691원